

수원지방법원 2018. 7. 5 선고 2017나70168 판결 [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18. 7. 5 선고 2017나70168 판결

수원지방법원 2017. 7. 6 선고 2016가단515588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

피고, 항소인 B

변론 종결 2018. 5. 24

판결선고 2018. 7. 5

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. 7. 6. 선고 2016가단515588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,가. 화성시 C 답 1,739㎡ 중 별지 도면 표시 89, 88, 87, 86, 42, 92, 91, 90, 45, 8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9㎡를 분할하고,나. 화성시 D 답 2,050㎡ 중 별지 도면 표시 86, 85, 84, 83, 82, 56, 38, 39, 95, 94,93, 42, 8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04㎡를 분할하며,다.

화성시 E 답 6,003㎡ 중 별지 도면 표시 82, 81, 80, 79, 78, 77, 76, 75, 31,100, 99, 33, 98, 97, 96, 36, 37, 38, 56, 8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631㎡를 분할하고,라.

화성시 F 답 446㎡ 중 별지 도면 표시 75, 74, 73, 72, 71,26, 27, 28, 29, 103,102, 101, 31, 7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64㎡를 분할한 후,위 각 선내 부분에 관하여 2000. 4. 3.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,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,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2. 추가 판단

피고는,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출한 복토 및 지하수 개발비용 2,6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반환할 의무가 있고,위 부당이득반환의무와 피고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,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,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0. 4. 3.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1년 초순경 G으로 하여금 복토 및 지하수 관정 연결공사를 하도록 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 복토 및 지하수 개발의무를 이행한 점,② 이로부터 약 4년이 지난 후 피고는 2004. 12. 10.부터

같은 달 17.까지 사이에 1,300만 원을 들여 화성시 C, D, E, F 토지에 흙매립 및 평탄작업 공사를 하였고, 2005. 2. 10. 200만 원을 들여 D 토지에 지하수 관정 시공 및 설치 공사를 한 점 등의사정이 인정된다.

피고는, 원고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흙으로 복토작업을 하고, 기존지하수에 용수관만 연결하여 도로 개설 후 위 지하수를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자신의비용으로 다시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, 원고가 복토 및 지하수 관정 연결공사를 한후 약 4년 정도가 경과한 후에 피고가 재차 공사를 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정한 복토 및 지하수개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.

따라서 설령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다시 복토 및 지하수 관정 연결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, 그 비용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(피고가 주장하는 동시이행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).

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추가 주장도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.

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송승용판사 한나라판사 신동웅별지

별지